



외국인 여러분께!!

외국인 주민에게도, 일본인과 같은 「주민기본대장법」이 적용됩니다.

# 외국인 주민의 주민기본대장제도가 시작됩니다!!

2012년 7월 시행 예정

《외국인등록법은 폐지됩니다》

## 외국인주민의 편리성이 향상됩니다!

-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전원이 기재된 증명서 (주민표의 사본등)이, 발행 가능하게 됩니다.
- 주소변경신고에 의해,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등의 신고가 있었다고 인정 종래에 비해 신고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.
-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변경에 대해서, 종래, 지방 입국관리국과 시읍면의 양쪽 모두 필요했던 신고가 지방 입국관리국만의 신고로 끝납니다.

## 주민표가 작성되는 분

- 중장기체류자(체류카드 교부대상자)
- 특별영주자(특별 영주자증명서 교부대상자)
- 일시비호 허가자 또는 가체재허가자
- 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 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체재자

## 신제도에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...

2012년 5월 무렵에, 외국인등록원표를 갖추고 있는 시읍면에 대하여, 외국인주민의 거주민표를 작성해,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므로, 확인하여 주십시오.